

국방부령

방 위 사 업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
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방부 (조직관리담당관)
연 월 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술의 전 순기에 걸친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방기술보호국 내 분장사무를 조정하고,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결원인 정원 9명(사무운영서기 2명, 사무운영서기보 7명)을 일반직 8급 정원 2명, 9급 정원 7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”을 “국방과학기술 국내외 정책업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8호,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,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
2.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서 작성 지원 및 실행계획 수립
3.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운영
6. 국방과학기술 분야 대내외 위원회 운영 및 지원
9.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

제10조제3항제10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승인은 제외한다”를 “승인을 포함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기초연구, 응용연구·시험개발, 선도형핵심기술, 핵심소프트웨어개발, 선행핵심기술, 국제공동연구개발(이하 ‘핵심기술’이라 한다.) 사업 기획·소요결정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성
2. 핵심기술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·통제
3. 핵심기술 사업 중기계획·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·결산
4. 핵심기술 사업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
5. 국제기술협력위원회 운영, 국제기술협력협정서 체결, 국방과학기술자 교환 조정·통제

제10조제5항제1호 중 “수출입 등의 통제 및”을 “등의”로, “수립 및 제도 개선”을 “수립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
5.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
9. 국방과학기술 통제목록의 선정 및 관리
10.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

11.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

12. 방위산업기술 지정·변경·해제 및 판정

제10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”을 “방위사업청장이 최종사용자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9호) 중 “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「대외무역법」”을 “「대외무역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 정책 수립·조정 및 관리

3.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군용물자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제도 운영

8.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시스템 구축 운용

9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

10.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·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

11. 수출통제 위반기업 행정처분 및 관리

12. 수출입 통제제도 교육 및 홍보

별표 1 운전서기 1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”을 신설하고, “행정서기보 1”를 삭제하며, 사무운영서기보 “8”을 “3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 운전서기 1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6”을 신설하고, “행정서기보 1”를 삭제하며, 사무운영서기보 “8”을 “3”으로 한다

별표 2 행정서기 3 다음에 “행정서기·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7”을 신설하고, 행정서기·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7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”를 신설하며, “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6”를 삭제하고, 사무운영서기 “3”을 “2”로 하며, 사무운영서기보 “8”을 “7”로 한다.

별표 3 행정서기 2 다음에 “행정서기·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9”를 신설하고, 행정서기·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9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”를 신설하며, “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”를 삭제하고, 사무운영서기 “2”를 “1”로 하며, 사무운영서기보 “6”을 “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국방기술보호국) ①·② (생략)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<u>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성</u> 2. <u>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</u> <신설> 3. (생략) 4. <u>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</u> 5. <u>방위사업 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·분석 및 평가와 자료 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·조정 및 통제</u> 6. <u>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·감독</u> 7. <u>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</u>	제10조(국방기술보호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<u>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</u> 2. <u>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서 작성 지원 및 실행계획 수립</u> 3. <u>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운영</u> 5. (현행 제3호와 같음) 4. <u>국방과학기술 국내외 정책업무 -----</u> ----- <삭제> 6. <u>국방과학기술 분야 대내외 위원회 운영 및 지원</u> <삭제>

8.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
관한 업무(민간이전의 승인은
제외한다)

<신 설>

9. · 10. (생 략)

11. 양산품(量產品)에 대한 국방
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
관한 관리 업무

12. (생 략)

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
립 및 사업의 조정·통제 및
관리

2.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
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

3.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
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
계획에의 반영

10. -----
----- 승인을
포함한다-----

9.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시스
템 구축 및 개선

7. · 8. (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
같음)

<삭 제>

11. (현행 제12호와 같음)

④ -----
-----.

1. 기초연구, 응용연구·시험개
발, 선도형핵심기술, 핵심소프
트웨어개발, 선행핵심기술, 국
제공동연구개발(이하 ‘핵심기
술’이라 한다.) 사업 기획·소
요결정 및 핵심기술기획서 작
성

2. 핵심기술 사업 계획의 수립
및 조정·통제

3. 핵심기술 사업 중기계획·예
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
의 분석·결산

<신 설>

<신 설>

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및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

2.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

<신 설>

3. · 4. (생략)

5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

6.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·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

7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조사·처리

4. 핵심기술 사업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

5. 국제기술협력위원회 운영, 국제기술협력협정서 체결, 국방과학기술자 교환 조정·통제

⑤ -----
-----.

1. -----
-- 등의 -----
----- 수립

<삭 제>

4.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

2. · 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5.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

<삭 제>

<삭 제>

8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
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
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
정책 및 제도 연구·개선

9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
술 등의 수출입 통제 및 보호
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
술 보호체계 구축·운영의 전
과 및 관리·감독

<신 설>

<신 설>

10. (생 략)

11. (생 략)

12.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
한 자문, 비용지원 및 전문인
력 양성지원

13. (생 략)

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
전문판정 및 심사

2. (생 략)

<신 설>

<삭 제>

9. 국방과학기술 통제목록의 선
정 및 관리

10.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
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

11.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
용 지원

7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6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
12. 방위산업기술 지정·변경·
해제 및 판정

8. (현행 제13호와 같음)

⑥ -----
-----.

1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
술 등의 수출입 통제 정책 수
립·조정 및 관리

2. (현행과 같음)

3.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군용

3. (생략) 4. <u>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</u> 5. (생략) 6. <u>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에 관한 업무</u> 7. <u>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승인</u> 8. <u>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</u> <u><신설></u> 9. <u>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</u> 10. <u>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·분류</u>	<u>물자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제도 운영</u>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5. <u>방위사업청장이 최종사용자인 ---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8. <u>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 등 수출허가시스템 구축 운용</u> 9. <u>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</u> 7. <u>「대외무역법」-----</u> -- 10. <u>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</u>
---	---

<u>11.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발간 및 최신화 유지</u> <u>12.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</u> <u>13.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지원</u> <u>14. 국방과학기술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</u> <u>15. 방위산업기술 지정·변경·해제 및 판정</u>	<u>를 위한 양자·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</u> <u>11. 수출통제 위반기업 행정처분 및 관리</u> <u>12. 수출입 통제제도 교육 및 홍보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---	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<u>행정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행정서기보</u> 또는	<u><신 설></u>	<u>6</u>	+6
<u>공업서기보</u>			
·	·	·	
·	·	·	
사무운영서기보	<u>8</u>	<u>3</u>	-5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의2]

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군인제외) 정원표(제23
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행정서기보</u>	<u>1</u>	<u><삭 제></u>	-1
<u>행정서기보</u> 또는 <u>공업서기보</u>	<u><신 설></u>	<u>6</u>	+6
•	•	•	
•	•	•	
사무운영서기보	<u>8</u>	<u>3</u>	-5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2]

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군인 제외) 정원표
(제2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</u>	<u>6</u>	<u><삭 제></u>	-6
<u>행정서기·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</u>	<u><신 설></u>	<u>7</u>	+7
<u>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사무운영서기	<u>3</u>	<u>2</u>	-1
사무운영서기보	<u>8</u>	<u>7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

[별표 3]

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군인 제외) 정원표
(제24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<u>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</u>	<u>8</u>	<u><삭 제></u>	-8
<u>행정서기·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</u>	<u><신 설></u>	<u>9</u>	+9
<u>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사무운영서기	<u>2</u>	<u>1</u>	-1
사무운영서기보	<u>6</u>	<u>5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